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 조례 (안)]

영 주 시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162
번호	

제출년월일 : 2000. . .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제정이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1999. 9. 7, 법률 제6204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영주시생활보호 적립금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기금은 시의 출연금 및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함(안 제2조)
- 나. 기금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의 용도에 사용함(안 제3조)
- 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 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기금의 지원대상은 수급자,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으로 함(안 제5조)
- 마.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함(안 제8조)
- 바.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0조)
- 사.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2조)

3. 제정조례 (안) : 덧붙임

4. 참고자료 : 덧붙임

- 가.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표준(안) 1부
- 나. 관련법령 (발체) 1부.
- 다. 입법예고결과 1부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공공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6. 기타 수입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영주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체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제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영주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영주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주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관인생략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 (053)950 - 2489 / FAX (053)950 - 2419
사회복지과 과장 민병조 사무관 이호식 담당자 신동보

문서번호 사회65130-10717

시행일자 2000. 10. 16 (5년)

공개여부 공개

(경 유)

발 용 시장.군수

참 조 사회(복지)과장

선 람	과장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2000.10.16	결 재	
	번호	177		민병조 이호식
	처 리 과		공 람	
	담 당 자	이호식		
	심사자		심사일	

제 목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송부

1. 사회65130-10560(2000. 9. 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호에 의거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 생활보호기금을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시군에서 조례의 정비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규의 변경등으로 기승부한 조례(안) 중 수정사항을 통보하오니 불임(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되, 동 기금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다른 기금과 계정을 분리 운용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부. 끝.

경 상 북 도 지 사

전결 사회복지과장 민병조

()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6. 기타 수입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

용한다.

②시장.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

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군수는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의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국(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과장(담당)으로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군수는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시·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관인생략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 (053)950 - 2413 / FAX (053)950 - 2419
사회복지과 과장 민병조 사무관 이호식 담당자 오해동

문서번호 사회65130-10560
시행일자 2000.09.20 (3년)
공개여부 공개
(경유)
발용 시장 군수
참조 사회(복지)과장

선립	총량	9,900	지시	
접수	일자		결재·공람	과장 오해동
	시간	2000. 9. 20		
	번호	1.5/18		담당 이호식
	처리과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이호식 2000.9.20

제 목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운용관련 조례(안) 송부

1. 보건복지부 생보 65130-750(2000.9.160호와 관련입니다.

2. 금년 10월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생활보호기금을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시·군·구의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송부하니, 동 기금의 설치·운용을 위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동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다른 사회복지관련기금과 통합 운영하는 시·군의 경우에도 불임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조례를 개정하되, 동 기금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다른 기금과 계정을 분리 운영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부 끝

경 상 북 도 지 사

전결 사회복지과장 민병조

()시·군·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도 및 ()시·군·구의 출연금
2. ()시·도 또는 ()시·군·구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동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 공동체가 제3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시·군·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시·군·구 생활보호기금설치및운동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관 련 법 령 (발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 9 <생 략>

제18조(자활공동체) ①수급자와 이에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③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공동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 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보장기금의 적립) ①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9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등의 보육·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①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 미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6조(차상위계층) 법 제24조에서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37조(지역자활지원계획)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해 시·군·구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 ③ <생략>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역주민·자활관련 전문가 및 자활기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군·구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보장기금의 설치)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기금의 제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제원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공공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생략>

제4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제44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기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지원대상 자활공동체)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는 그 구성원중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공동체로 한다.

②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던 자활공동체가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공동체의 존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성원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공동체에 한하

여 3년의 범위내에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0조(기금의 운용등) ①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115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

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15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고, 그의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입 법 예 고 결 과

- 조 례 명 :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예고방법 : 영주시보 제260호(2000년 11월 13일)에 게재
- 예고기간 : 2000년 11월 13일 ~ 2000년 12월 2일
- 의견제출여부 : 없음

의안검토보고서

1. 의안

- 의안번호 : 제162호
- 의안명 :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해당부서 : 행정지원국 사회복지과

2. 제정이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1999. 9. 7, 법률 제6204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영주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기금은 시의 출연금 및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함(안 제2조)
- 나. 기금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의 용도에 사용함(안 제3조)
- 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기금의 지원대상은 수급자,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으로 함(안 제5조)
- 마.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함(안 제8조)
- 바.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0조)
- 사.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2조)

